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640

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성일종·백종헌·임종득

곽규택・강선영・송언석

박덕흠 • 서지영 • 김장겸

윤상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병역자원의 감소,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 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.

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 보생,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,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 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.

그런데,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문제가 발생하고,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, 학생군사 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,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, 향후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(안 제62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의2제1항제3호 중 "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"을 "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"으로 한다.

제62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의2(장려금의 지급) ① 각	제62조의2(장려금의 지급) ①
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	
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	
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	
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	
하지 아니하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	3. <u>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</u>
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	될 사람
관후보생이 될 학생(군의 인	
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	
정한다)	
<u>&lt;신 설&gt;</u>	4.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사람